

초 점 기 획

2 국제특허분쟁의 원인분석과 전략적 대응방안

목 차

- I. 서론
- II. 새로운 국제특허체제의 필요성
- III. 국제특허분쟁의 원인고 양상
- IV. 국제특허분쟁의 대응전략
- V. 결론

林基哲

정책연구단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I. 서론

'95년 1월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제 세계경제의 구조는 EEA, NAFTA, APEC 등의 지역적 경제블록이 확대되면서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무역체제의 시장개방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무차별 개방압력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EU 일본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첨단산업기술에 대한 知財權의 보호강화 내지는 확대의 추세로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知財權보호 강화로 인한 기술이전의 어려움을 우리의 새로운 정책기조인 세계화의 전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술경쟁국으로 부상한 중진국이나 개도국에서 자국의 핵심기술 등의 유용이나 위조상품 교역방지 등을 위해 결국 국제적으로 GATT체제하에 다자간의 협상형태로서 UR/TRIPs(위조상품교역을 포함한 무역 관련 知財權에 관한 협정)등으

로 각국에 대한 知財權의 보호규제를 강화·확대하였으며 계속적으로 雙務的인 관계에서 적극적인 개방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잉태되기 시작한 국제시장환경속에서 우리기업들은 '8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의 기업들과 힘겨운 국제 특허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와중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또는 높은 기술료의 지불을 강요당하여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앞으로도 첨단기술분야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증가할수록 특허분쟁은 더욱 폭넓게 전개될 것이다. 이는 국제사기업간에 있어서 권리자와 침해자간의 단순한 기술분쟁의 차원을 뛰어넘어 특허의 무기화를 통한 국가간의 기술전쟁 또는 국익전쟁의 대리전 형태를 띠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향후 심화될 국내외 특허분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우리 기업의 자립적 첨단기술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우수한 특허권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확립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총체적인 대응방안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II. 새로운 국제특허체제의 필요성

1. 국제특허의 필요성

독창적인 발명가는 자신의 발명결과를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특허로 출원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특허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발명결과의 사용에는 제동이 걸리게 되고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는 무역 당사국인 두 나라 사이에 통상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 협정에 따라 상대국 국민에게 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이 보다 진전되어 두 나라 사이에 국제특허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의 정치·경제적 역학관계에 따라서는 국제특허가 불평등 협정으로 될 가능성이 짙을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발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결과, 독창적인 발명은 두 나라 사이는 물론이고 보다 많은 나라 사이에서 똑같이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러한 요청이 바로 1883년에 파리조약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체결된 파리조약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즉 파리조약은 지적 산출물의 국제화에 직면하여 독창적인 발명은 국경을 넘어서라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념하에 국제특허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공해 왔다. 그 동안 파리조약을 통해 국제특허출원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특허협력조약(PCT)과 광역 특허제도인 유럽특허조약 등도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의 파리조약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남북문제의 여파가 밀어닥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파리조약을 바라보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시각과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파리조약이 체결되고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주도권을 발휘해 온 선진공업국들은 기술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서로 격차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균등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선진국들에게 지배를 받아 온 식민지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

게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고 세계의 정치경제 무대에 출현하면서 상황은 변해 갔다. 이 신생 독립국들이 개도국으로서 파리조약에 가맹함에 따라 이제 80%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1961년 이후 이들 개도국들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경제적 이익을 주장하게 되면서 이른바 남북문제가 표면화되기에 이르렀다. 개도국들은 파리조약의 구조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국가발전에 있어 건전한 정치와 산업의 발전을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산업의 발전에는 특허제도의 확립은 물론,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를 비롯하여 선진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려면 특허제도의 국제화와 근대화도 필수적이라는 데에도 생각이 이르렀다.

또 외국인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수입만을 고집하는 현상도 생기자, 파리조약은 자국의 공업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에 대해 개도국의 산업과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개도국들이 파리조약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UN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그 개정안을 작성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면, 우선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파리조약의 내국민 대우 제도는 형식적 평등원리에 바탕한 것이므로 이를 대등한 것은 대등하게, 다른 것은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실질적 평등원리에 준하는 제도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권리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자체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내국민에 대한 특허요건의 완화, 외국인 특허권자의 특허권 기능을 내국민의 그것보다 축소할 것 등의 개정안이 제안

되고 있다.

그 다음 외국인이 지닌 권리능력의 유효화를 위한 우선권 제도는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특허출원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개도국의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12개월로 되어 있는 우선권 주장기간이 짧으므로 이를 연장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특허출원은 개도국 국민에게 있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고 또 그 출원의 준비에도 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리조약의 세번째 특징인 특허독립의 원칙에 대해서도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 특허독립의 원칙이란 동일한 발명에 대해 부여된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는 상호의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도국은 특허요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특허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동일한 발명에 관련된 개도국의 특허는 자동적으로 무효화 된다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개도국의 불충분한 심사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개도국측은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파리조약의 출발점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개도국이 제출한 파리조약의 수정안을 선진국의 입장에서 개략적으로 짚어보았는데 이는 결국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맹국 사이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이것이 다름아닌 특허제도에 관한 남북문제이며 이 문제를 가맹국들이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파리조약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현안 과제라 하겠다.

2. 파리조약을 초월하는 새로운 체제

세계 각국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국제적 기술교류가 활발해진 오늘날 개별국가들 사이의 서로 다른 특허제도로 인해 국제특허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나 파리조약의 체제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국제특허의 체제를 구축하지는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관계는 교통·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기업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해 더욱 심화·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과 관세장벽 같은 마찰도 빈번히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는 이해 대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국 사이의 교섭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다자간의 해결 체제를 필요로 한다. 즉 GATT나 UR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적 마찰의 해소를 위해 냉전 후의 국제통상을 담당할 새로운 체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통상의 새로운 체제의 구축은 특허를 포함한 지식소유권 제도의 국제적인 틀을 재구축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개별국가 사이의 무역 역시 특허를 포함한 지적 소유권이 서로 충분히 존중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마찰을 빚어내기 때문이다. 거액의 연구개발투자로 얻어진 발명이 손쉽게 도용 또는 모방되어 동일한 제품으로 생산되는 관행으로는 공정한 통상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국의 상이한 특허제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조화(Harmonization)가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GATT에

서도 知的所有權條項(TRIPs)이 중대한 과제로 거론된 이유이기도 하다. 즉 각국간의 특허를 둘러싼 문제들이 국제적 현안과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통합을 꾀하고 있는데, EU를 축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일부를 규합하여 형성된 유럽경제지역(EEA)의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NAFTA와 함께 이러한 광역경제의 블럭화 진전은 여러 국가들 사이에 '특허제도의 통일'이라는 새로운 광역특허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듯 특허를 포함하여 지식소유권제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두 개의 카다란 국제적 변혁의 흐름은 결국 파리조약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국제적 체제를 구축해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제특허제도의 새로운 틀로는 첫째, GATT TRIPs에서의 다자간 교섭 및 WIPO에서의 특허통일조약체결을 위한 움직임이고, 둘째는 다자간 교섭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2국가간 교섭이며, 셋째는 광역경제블럭화와 수반하여 형성되고 있는 EPC를 비롯한 광역특허제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틀은 모두 각국의 상이한 특허제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에 이 과정에서 자칫 발명의 보호라는 특허제도의 기본 목표가 변질될 우려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파리조약은 개별국가의 특허제도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개별 국가의 특허제도가 상이하거나 격차가 있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특허제도가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에 의존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한 당연한 귀결이

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산업구조의 변화는 여러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제산업구조를 지탱하는 특허제도 역시 개별 국가들의 제도를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세계적 조화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대세라 하겠다.

Ⅲ. 국제특허분쟁의 원인과 양상

1. 국제특허분쟁의 발생 원인

(1) 제도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개별 국가 사이의 특허법 상충

각국 사이의 무역확대로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특허권을 시장경쟁의 무기로 이용하려는 기 업이 증가한 결과 전체 국제특허의 절대양도 증가하고 있다. 자국의 국제 경쟁력 회복을 위해 특허에 대한 평가도 새로워지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현상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물론이지만 국제특허 분쟁 발발의 근원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파리조약에 따라 국제특허의 취득이 쉬워지긴 했지만 국가마다 독자적인 특허법 규정이 있으므로 발명에 대한 해석도 개별 국가의 독자적 법률과 관습에 따라 행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각국의 상이한 제도와 문화의 차이에서 생기는 운용상의 문제점들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많다.

(2) 知財權의 남북문제 및 국제특허분쟁의 증가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知財權의 보호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知財權의 권리의식의 결핍과 함께 기술이전을 위한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보호제한을 주장함으로써 선후진국간 통상마찰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미국의 특허는 주로 기본특허와 물질특허가 많은 반면에 일본 및 우리나라 등 중·후진국들은 기본특허를 이용한 개량 발명이 많거나 물질자체보다 물질의 제법특허가 많으므로 결국 저축침해분쟁의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수출경쟁력의 비교우위 확보전략과 함께 R&D 투자비 회수에 따른 高로알티 전략으로 인한 知財權의 남북문제는 결국 선진국의 특허공세를 강화시키면서 국제 특허분쟁을 야기시켰다는 분석이다.

(3) 미국의 무역 절차 대책과 통상압력의 강화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知財權의 독점권 부여가 권리남용 및 경쟁제한 행위를 야기한다는 논리에 따라 보호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80년대 들어 미국제조업의 空洞化 현상, 위조상품교역의 증대, 일본 및 중진국들의 기술경쟁력 강화 등의 외부압박요인으로 비롯된 수출경쟁력 저하가 빚은 무역수지적자를 만회하고 지속적인 기술우위확보를 위해 통상전략적 차원에서 知財權을 경제전쟁의 무기화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표 1〉참조). 이러한 배경아래 미국은 產財權과 함께 新知財權분야에서 보호범위와 수준을 확대·강화하는 가운데 선진기업들은 기술이전의 기피 또는 高로알티 요구로 일본 및 중진국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쌍무협상에 의한 개방압력의 강화, 다자간 협상에 의한 국제 규범화,

〈표 1〉 미국 IT사 경상이익 對 로알티 수입 비교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85	'86	'87	'88
경상이익	-155	99	402	516
로알티수입	10	20	191	124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경쟁시대의 특허관리전략」, '93. 1, p. 24.

EU의 위조상품 교역 방지대책과 함께 최근 자유무역질서의 국제적 규범으로서 UR/TRIPS 협상을 타결지은 바 있다.

2. 특허분쟁의 양상

특허분쟁은 특허권의 침해로부터 비롯되는데 특허권 침해란 권리자 이외의 제3자가 권리 보호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위법하게 실시하는 행위이며, 그 형태에 따라 직접 침해 및 간접침해로 구분된다. 다양한 분쟁 해결방법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다른 법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분쟁은 끊이지 않고 더욱 복잡다기해지는 양상을 띠는 추세이다. 이러한 양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1) 특허권 사용료 또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고액화

과거에는 특허권 사용료가 특허실시에 의한 매출이익의 몇 % 수준이었으나 '85년도 폴라로이드 對 코닥社의 인스턴트 카메라 손해배상액의 고액화를 계기로 종래의 로알티 산정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특허료의 주요 수입원 개념이 자리를 잡았다.¹⁾ 뿐만 아니라 특허기술도입시 건당 기술료의 증가율이 임금상승률보다 훨씬 상회하므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태다.²⁾ 따라서 핵심기술의 외국특허 이용 없이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제품생산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대부분을 외국특허 이용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고액의 로알티는 재산성 약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2) 先소송 後협상의 경향 대두

미국에서는 소송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배심원제나 3배 배상제도, ITC 제소의 경우 단기 집중식 소송진행전략 등에 따라 피소자의 사전 준비 미비로 당황하게 만드는 소송제도라든가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높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특허권자의 의도대로 조기에 불리한 협상에 임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 특허 클레임의 무차별 제기 사례 빈발

기업들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고액화와 특허소송에서의 승소에 자극받은 개인 발명가들이 특허 브로커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완제품업체(Set Maker)가 아니므로 피소된 업체에서의 역클레임이나 크로스 라이선싱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이므로 일반 협상관행을 뛰어넘어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사례가 빈번하다.

(4) 부품업체보다 완제품업체에게 특허

클레임 또는 소송 제기

그 이유는 부품보다 완제품에 대한 매출액 대비 로열티가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업체로부터 핵심부품을 구입하여 조립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며 특허보증을 요구해도 부품제조업체가 기피하는 실정으므로 자체 기술경쟁력 확보의 절실함을 깨우치고 있는 실정이다.

(5) 클레임 대상제품은 첨단제품이지만 대상 기술은 기존 기술인 경우가 많음.

미국은 출원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해도 특허화 될 수 있는 독특한 특허제도³⁾를 이용하여 현재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미국의 노후 기업들이 이미 일반화된 기술의 특허화를 통해서 수입을 올리려 하고 있음이 자주 목도되고 있다.

(6) 일본기업들이 한국기업에 특허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일본의 특허 공세는 그들의 특허권을 바탕으로 특허료 수입을 확대하고 나아가 한국의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對韓 진출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품목에 따라 신제품이나 신기술인 경우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고액의 특허료를 요구하는 등 국내전자업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사례가 이에 속한다.

3. 국제특허분쟁의 전망과 향후 전개 방향

(1) 기술선진국의 知財權 개방압력정책의

강화가 예상됨.

UR/TRIPs의 타결로 자유무역주의와 知財權에 관한 국제적 보호제도의 규범화 및 보호강화가 예상되며, 특히 미국의 경우 슈퍼 301조의 발동 위협으로 시장개방을 위한 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⁴⁾

(2) 선진국 기업의 기술우위확보를 위한 知財權 보호주의의 강화 및 특허권의 공유 체제화

첨단기술분야의 기술우위 확보 및 R&D 투자자의 회수전략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중진국에의 기술이전 기피, 高로알티 전략, 新知財權 분야의 특허공세강화 등으로 경쟁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사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며, 국제적 기업간의 상호 특허 공유체제에 의한 기술 및 시장우위 확보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⁵⁾

(3) 한국, 일본기업 등의 수출우위품목에 대한 전략적 특허공세의 강화

수출경쟁력 확보정책의 일환으로 쌍무적 협상에 의한 시장개방압력이 강화될 경우, 직접 관련성은 없으나 특허권 보호수준강화, 제도 정비 등의 요구를 통해 우리의 수출전략품목에 대한 무차별적인 특허공세가 민·관 연계체제에 의해 향후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⁶⁾

(4) 한국, 일본의 수출시장에서의 知財權 보호강화요구 및 침해사범의 조직적 감시 강화
미국 정부차원에서의 知財權보호강화의 요구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은 현지에서의 전문 감시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집요한 知財權 감

시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⁷⁾

(5) 다국적 기업간의 시장독점적 확보를 위한 知財權의 전략적 제휴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知財權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또는 경영정책면에서 전략적으로 연합체를 형성하거나 국제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약화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정부, 의회, 법원 등에 통상압력 또는 제도변경 등을 위해 집단적인 압력 또는 여론형성을 주도할 것이며 향후 더욱 조직적 운동을 전개할 움직임이다.⁸⁾

(6) 한국기업들의 기술이전 곤란 및 로얄티의 부담 증대 등으로 수출경쟁력의 악화 우려

'89년을 고비로 하여 기술도입건수는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건당 로얄티는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첨단기술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므로 특허권의 무기화는 기업의 생존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⁹⁾

(7)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미국의 슈퍼301 조 및 스페셜301조의 발동위협과 UR/TRIPS 협정에 따른 WTO의 국제적 갈등에 대한 조정역할 증대

미국의 대내외 무역에 있어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의 양면성¹⁰⁾은 GATT/US/TRIPS의 공정한 무역정신에 어긋나므로 국제적인 철회압력과 함께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갈등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최근 對日 포괄 경제협상의 결렬에 따른 슈퍼301조의 발동 압력을 통해 미국의 입장에서 불리한 차별행위에 대해 일본에게 강

력한 무역보복위협을 가하고 있으나, 국제적 입장에서 향후 WTO의 제소형식으로 해결하자는 국제적 여론과 함께 국제무역질서의 균형을 확립하려는 다자간의 협상력이 점차 강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¹¹⁾

IV. 국제특허분쟁의 대응전략

국제특허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려면 다면적 접근이 요구된다. 즉 특허분쟁 자체에 대한 대책은 물론, 특허침해소송까지 다루어야 하나 이 글에서는 국제특허분쟁의 기본 대책으로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대응책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1. 정부 차원의 기본 대책

(1) 국제 특허분쟁에 대한 총체적 대응체제의 확립

향후 기술패권주의 시대에 知財權 분야의 다자간 협정인 UR/TRIPS의 발효('95)와 함께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미국의 쌍무적인 통상압력,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국제특허분쟁에 따른 로얄티의 고액화와 민간기업의 마찰해소문제 등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조직상 적절한 기능을 부여하고 상호유기적인 역할을 수행함이 미땅하다. 첫째, 특허청내에 국제특허분쟁을 담당할 知財權분쟁정책국과 같은 기구의 설립과 함께 정부·기업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계적 대응체제의 구축을 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민간기업간의 產財權 분쟁 및 직무발명 보상문제 등에 대해 법원제소 전단계

의 분쟁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국제특허분쟁 당사국의 법령 및 관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知財權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분쟁의 사전예측 등을 수행하는 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기업간의 기술협업체를 활성화시키고 국제특허분쟁에 관한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대응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자원이 요구된다. 다섯째, WIPO나 WTO 등 국제특허분쟁의 중재 및 해결 기구에 대한 대응능력의 확립도 시급히 요청되는 현안 과제이다. 여섯째, 이 밖에도 국제특허분쟁 발생시 마후 조정 및 효과적인 협상을 중재할 창구의 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2) 知財權 보호제도의 강화 및 침해사범의 지속적 단속

UR/TRIPS 타결로 인해 선진국의 위조상품 교역방지 및 知財權 보호수준강화와 新知財權 보호범위확대의 국제적 규범화에 따라 관련된 국내법령을 정비, 강화하고 불법복제, 위조상표와 상품의 침해사범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쌍무적 통상압력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또 향후 UR/TRIPS의 협정정신에 입각한 국제적 분쟁해결기구인 WTO에서 합리적으로 문제점을 조정·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특허정책과 관리능력을 선진화시킴과 동시에 UR/TRIPS 협정에 관련된 보호제도의 법령정비 및 보호범위의 확대에 따른 우리의 현실적 입장 반영에 주력해야 한다.¹²⁾

(3)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체계 확립

국제 특허분쟁의 빈발과 高로알티 시대에 정책적인 판단과 대책, 심사, 심판관의 전문성 제고, 기업의 특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 법무, 어학적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해외연수, 국제특허분쟁의 소송실무경험, 연구기능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기업의 특허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제특허 연구 프로그램, 특허전문대학, 연구소 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변리사·변호사의 특허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新知財權 분야의 업무영역확대를 비롯한 국제특허분쟁의 소송 수행능력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정부의 몫이다.

(4) 우수특허발명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우리의 신기술·신제품이 국제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허분쟁 발생시 강력한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요인은 우수한 특허발명의 창출과 그 관리제도에 있다. 특히 영세기업이나 개인발명가에 대한 발명 활동과 그 권리화, 사업화를 제도적으로 지원, 보장해 주고, 기업연구소의 직무발명자에 대해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확립되어 발명 대가에 대한 성실한 인센티브가 보장될 때 기업의 기술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다.

이는 우수발명품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효율적·체계적인 제도의 확립, 영세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들의 우수발명품의 해외출원 및 사업화 자금의 지원확대, 스스로 사업화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에 대해 권리매매·실시권 허여알선 등을 통한 사업화 지원 등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¹³⁾

2. 기업 차원의 기본대책

(1) 전략적 특허발명 능력의 확보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업의 자체기술개발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거나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는 첨단기술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술축적을 통하여 선진기업과의 기술도입이나 기술제휴 또는 특허분쟁시 크로스 라이선싱 등 자사의 특허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체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전략적인 기술개발체제를 수립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①원천기술개발, 회피·개량기술 개발 ②마케팅 지향, 고부가가치, 독창적 기술개발전략, ③기초기술, 생산기술, 응용기술, 첨단기술의 효율적인 산·학·연 공동연구, 수탁연구, 국제협력연구 추진 등이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방안이다.

둘째, 부족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 기업과의 전략적 기술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특허전담 부서 및 경영기획, 영업부와 함께 「전략 기술기획팀」을 구성하고, 국내외 관련 특허기술 동향에 대한 세계적 기술분포와 기업간의 기술 분포특성에 관한 P·M 작성을 통해 분명히 규명하고, 부족한 기술분야를 보강함으로써 국제시장의 확보 및 향후 특허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전략적 기술제휴, 합작생산기술협력, 특허권의 공유, 특허분쟁시 크로스 라이선싱, 특허권의 매입 등이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셋째, R&D 활동의 국제화 전략으로서 무한

경쟁의 자유무역시대에 지역적 경제블록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전략의 구사이다. 이는 선진국의 기업을 중심으로 현지 합작투자 내지는 합작생산체제를 뛰어넘어 R&D 활동거점을 구축하며, 현지 품질규격과 소비자 특성에 맞는 마케팅 지향의 R&D 활동을 통해 특허발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장확보 및 특허보호 범위 실정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다.

(2) 특허전문가의 양성과 소송협상능력 강화

첫째, 특허업무는 법률적, 기술적, 언어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성격상 단기간에 경험을 축적하기가 곤란하므로 특허분쟁에 사전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내특허전문가를 경영정책적인 차원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 특허분쟁시 협상능력과 소송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 전문연수기관을 통한 교육투자가 따라야 한다. 둘째, 해외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으로서 미국의 경우 특허법률 회사에 의한 교육 또는 전문적인 대학교육 및 연구기관 등의 연수프로그램 등이 구비되어 있다. 셋째, 특허법률사무소에 교육생을 특허법률 사무소에 위탁 파견하여 실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3) 해외특허출원의 차원 및 권리취득의 확대

지재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에 출원하여 권리를 가질 때 비로소 권리주장 및 시장선점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 수입국의 보호제도에 의한 방어력을 확보하고 분쟁 발생시 크로스 라이선싱의 협상추진 및 현지에서의 실사권 설정으로 로열티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해

의 출원이 필수적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현지의 관련 특허를 공유하거나 매입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4) 전략적 정보관리체제의 효율적 운영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된 국내외 선행기술조사를 신속, 정확히 해야만 독창적인 기술개발 또는 공백기술개발 방안을 확실히 기획할 수 있다. 특허정보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목표설정 단계에서부터 특허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연구과제를 분명히 설정함으로써 중복연구와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설계변경(회피설계, 개량설계)을 통해 특허권자와 크로스 라이선싱에 유리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허정보의 수집을 위해서는 DB 검색을 통해 특허청의 행정 전산화, 산업정보기술원의 전용DB 시스템화, 민간기업의 특허정보관리시스템에 온라인을 구축하고 선진국 특허청과의 특허정보공유체제를 Network화(특허정보 고속도로망)시킴으로써 산·학·연의 기술개발 주체에 대해 적시적소에 국내외의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히 수집, 분류, 가공, 저장, 공급할 수 있는 정보체제의 확립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적 요체가 될 것이다.

(5) 국제특허분쟁의 대응체제 확립

과거 특허분쟁 초기('80년대 후반)에는 특허정보나 분석능력의 미흡, 협상력의 부족 등으로 외국특허권자의 요구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동안 국내외 분쟁경험 등을 검토

해 볼 때 특허의 무효성, 기술의 차이점, 법령 적용상의 오류 등 그들의 특허에도 허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협상능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권리침해여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공격과 방어태세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내외 특허전문가를 분야별로 조기에 선임하고 국내외 특허정보를 망라한 PM작성을 중심으로 하여 특허청구범위와 균등론의 철저한 해석, 클레임에 대한 기술적, 권리적 문제점의 명확화, 소송진행과 함께 회피·개량설계방안을 전략적으로 설정한 후 소송 및 협상대책에 임해야 한다. 둘째, 특허분쟁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확보에 있는 것인 만큼 관련된 국내외 기업간의 기술 및 권리의 협력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단일 기업보다 공동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대응할 경우 기업부담도 줄어든 뿐만 아니라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진국이 무차별 특허공세를 함부로 감행할 수 없는 이른바 강자의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이다.¹⁴⁾

3. 知財權과 연구개발전략

知財權을 둘러싼 현안문제를 두고 EU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일 것 같다.

첫째, 정부 연구소의 시각으로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와 확산이 자신들의 연구비 수혜와 어느 정도 연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합리적인 연구비 배분을 도모하려면 연구개발의 목표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체계로서 해당 프로젝트 수행의 결과 라이선싱으로 얻은 수입 및 특허의 수 등이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시각으로서 기술혁신의 결과를 보호해 주는 知財權 체계를 과연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다. 기술개발이 때로는 기존의 특허보다 앞서갈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기술자체 또는 데이터의 교환과 복제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知財權의 보호가 미치는 영역이란 모호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혁신의 결과를 보호하려는 기업들은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知財權의 확보를 위한 한계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知財權과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면 첫째, 知財權 문제를 과거에는 법적·경제적 측면에서만 다루었으나 앞으로는 법적·경제적·과학기술적·사회학적 분석을 위해 새로운 학제적 연구체제로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기존의 관련 연구소를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및 국제적 특허 관련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와 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접근하기 쉽게 개발함으로써 기업과 정부 연구소가 최근 개발되고 있는 신기술의 확인 정책적 함의의 분석 혁신활동에의 반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知財權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기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 즉 知財權 전략의 상호교환에 대한 제약·정부 연구소의 연구개발 관련 전유권 행사 성공적인 知財權 협상을 위한 역량과 인적자원확보 등의 해결

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지적재산이 미래의 혁신을 위한 잠재력의 척도라 한다면 기술혁신과정과 경쟁우위확보를 위해 知財權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그리고 투자 회수에 필요한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知財權 관련 기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예컨대 기술예측을 통해 미래 핵심기술이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허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분야에서 知財權 정책을 발전시키려는 보다 의미있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知財權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간 논란과 임기응변식 미봉책으로만 일관할 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인터넷 등 컴퓨터를 통한 정보교류를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결국 정보화의 진전은 知財權 보호의 장벽을 더욱 낮추는 반면, 기업간 국가간에는 이의 통제를 위한 협상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순환고리 속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은 지식형 사회의 조기구축에 입각한 기술경영(Technology Management)의 체계화라 할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무한경쟁시대에 知財權은 국가적인 기술자산이 될 것이 예견되므로 미, EU, 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知財權

의 전략적 지도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에서 추진 전략의 방향을 정립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제 知財權은 기술개발을 위한 참고사항이나 방어용의 기술정보개념의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나 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위한 경쟁력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중추적 情報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유무역시대에 상대적으로 강화될 기술보호주의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공격과 방어의 양면성을 지닌 전략적 수단으로 지재권이 활용될 것임을 반증해 준다.

여기서 두 가지 전략이란 생존을 위한 방어 전략과 성장을 위한 공격전략을 일컫는다. 먼저 생존차원의 방어전략개념은 여러 유형의 대외적 知財權 관련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책과 이를 위한 체제구축을 의미한다. 그 반면에 성장차원의 공격전략 개념은 외국의 知財權을 수집·분석·가공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하여 우리의 知財權을 세계 시장에 등록하여 특허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세계 소비자의 기술적 니즈를 찾아내 효율적인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원천 기술개발, 마케팅 지향적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의 국제적 특허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안의 발굴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기술패권주의

시대의 전략들은 세계화 속에서 독단이 아닌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Competeteration)하면서 지구속의 한국(Glocalization)이라는 세계지향적 국제화의 새로운 실천개념과 함께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국가적 명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임기철 윤길주,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한 特許 戰略,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정책참고자료, 1994.
- 2) 黃宗煥, "知的 財産權 制度의 理解 및 成功的 特許管理戰略", 技術管理, 産技協, 1994. 10, pp. 49~56.
- 3) 山川政樹 編著, 國際特許摩擦と日本の選擇, 東洋經濟新報社, 1994.
- 4) Foray, 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New Systems of Innovation: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TI Review, No. 14, Paris: OECD, 1994, pp. 119~152.
- 5) Webster, A., "New Concerns over Intellectual Property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SRC, June 1994.